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201473 손해배상(지)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도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4. 3. 7.부터 2026.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웹툰 서비스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웹툰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아래 표에 적힌 웹툰(이하 '이 사건 웹툰'이라고 한다) 저작권자로서 이 사건 웹툰을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순번	작품명
1	D
2	E
3	F
4	G
5	H

3) 피고는 2025. 5. 22. '2024. 3. 3.부터 2024. 3. 7.까지 웹툰 공유사이트에 이 사건 웹툰을 업로드해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인천지법 2024고약26119호),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 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따라서 이 사건 웹툰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215,164,085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위 금액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그래서 이 법원은 약식명령 내용 등을 고려해서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의 일부로 원고가 구하는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4. 3. 7.(최종 불법행위일)부터 2026. 3. 13.(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명곤